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97

발의연월일: 2020. 9. 28.

발 의 자:정점식·정운천·이만희

이달곤・이양수・송석준

김정재 · 임이자 · 박완수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촌주민의 삶 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도서지역이 여객선 뿐만 아니라 유·도선 운항조차 없어 해당 도서지역 주민들은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낚싯배 등을 이용하여 육지와 도서를 이동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교통환경이 열악한 어촌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촌에 대한 기초조사 시 어촌의 교통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시 어촌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어촌 및 어항시설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3조, 제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58조). 법률 제 호

어촌 · 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 · 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어촌의 생활여건의 변화, 어항시설의 변동 등"을 "어촌의 생활여건의 변화, 어촌의 교통환경의 변화, 어항시설의 변동 등"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제19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어항시설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편익 증진계획 제20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

제58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 및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초조사 등) ① 해양수산	제3조(기초조사 등) ①
부장관은 어촌 어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어촌의 분포・인	
구변동의 추이, <u>어촌의 생활여</u>	어촌의 생활여건의
건의 변화, 어항시설의 변동 등	변화, 어촌의 교통환경의 변화,
어촌・어항에 대한 기초조사를	<u> 어항시설의 변동 등</u>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제4조(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2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u>6.·7.</u> (생 략)	<u>7.·8.</u>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2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	

여 수립하고, 어항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③ ~ ⑥ (생 략)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어 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5. (생략)

제58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8. (생 략) <신 설>

9. (생략)

②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어항시설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편익 증진계획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1. ~ 4. (현행과 같음)	
5.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	
에 관한 사항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제58조(공단의 사업) ①	
1. ~ 8. (현행과 같음)	
9.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 및 어항시설의 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u>10.</u>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